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06

인 천 지 방 법 원

제 1 -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1구합53270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
변 론 종 결 2021. 9. 30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20. 3. 18. 원고에게 한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(이하 '취득세 등'이라 한다) 합계 57,885,94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06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15. 7. 10. [redacted]구 B 지상에 세대별 전용면적이 60㎡ 이하인 아파트 33세대와 오피스텔 20호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물(이하 '이 사건 건축물'이라 하고, 그중 아파트 부분만을 지칭할 경우에는 '이 사건 공동주택'이라 한다)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.

나. 원고는 피고에게, 2015. 7. 15. 이 사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01,770,380원을 신고·납부하였다가, 2020. 1. 31.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(이하 '이 사건 면제조항'이라 한다)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·납부한 위 취득세 등 중 57,885,94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. 피고는 2020. 3. 13. 경정을 거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을 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1) 2014. 12. 31. 법률 제1295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14조(이하 '이 사건 부칙규정'이라 한다)에서 "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"고 정하였는데, 원고는 2014. 12. 31. 이전에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착공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2014. 12. 31. 이전에 있었으므로, 위 법률 제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06

12955호에 의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이 사건 면제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(이 사건 처분은 종전 규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 보호 법리를 밝힌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누5666 판결 등에 반한다).

2) 이 사건 면제조항에서 정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면제제도(이하 '이 사건 면제제도'라 한다)는 2014. 12. 31.를 끝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그 시행 종기가 수차례 연장되면서 약 20년 동안 시행되어 왔고, 이에 원고로서도 2014. 12. 31. 후에도 이 사건 면제제도가 연장 시행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다. 과세관청 또는 입법기관이 조세 관련 법령 제, 개정 등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,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으나, 과세관청에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이 사건 면제조항 적용 여부

원고의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에 이 사건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

이 사건 면제조항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한다.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2014. 12. 31. 이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06

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일은 구 지방세기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4조 제1항 제1호, 구 지방세법(2015. 7. 24.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조 제7항,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5. 7. 24.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된다.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5. 7. 10.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(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사용일이 더 빠르다고 볼 자료는 없다), 2014. 12. 31. 이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에는 이 사건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.

원고는, 대법원 93누5666 판결 등이 '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세법이 있을 때 부칙에서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었다면, 납세의무 성립 이전이라도 납세자가 구법에 따라 원인행위를 한 이상 그 원인행위시 유효하였던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'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, 구법 시행 당시 원인행위를 한 납세자 신뢰보호 법리를 밝혔는데, 원고는 위 사용승인일 이전인 2014. 12. 26.경 이미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함으로써 원인행위를 하였고, 그 원인행위가 이 사건 면제조항의 일몰기한 2014. 12. 31.보다 앞선 이상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면제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그 면제조항 자체에서 정한 일몰기한에 근거하여 면제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뿐, 어떤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어 개정된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, 그 이전 구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하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06

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다(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,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부칙규정 관련 부분도 이 사건 면제조항 적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쟁점이 되지 못한다).

2)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

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

이 사건 면제제도의 시행 종기가 수차례 연장되면서 약 20년 동안 시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, 2014. 12. 31. 후에도 이 사건 면제제도가 연장 시행될 것으로 믿은 원고의 신뢰는 단순한 주관적 희망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기대이익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 또는 입법기관이 조세 관련 법령제, 개정 등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. 오히려 이 사건 면제제도가 처음부터 장기간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지 아니하고 단기의 시한을 두고 시행되면서 단지 그 시한이 연장되어 왔던 것이라면, 원고로서는 지방재정 여건, 사회적 환경의 변화,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면제제도의 시행 시기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.

원고 주장과 같이 오랜 기간 이 사건 면제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믿은 단순한 기대를 보호하게 된다면, 입법자가 지방세특례제도의 시행 종기에 즈음하여 변화된 정책적 환경과 형평과세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존속 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면제제도를 한시법령의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06

형태로 규율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06

별지

관계 법령

▣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. 1.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)

제33조(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)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(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,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 <개정 2013. 1. 1., 2014. 1. 1.>

부칙 <법률 제12175호, 2014. 1. 1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법률 제12955호, 2014. 12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단서 생략)

제3조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14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제15조(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)

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06

1.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
2. 「주택법」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

▣ 구 지방세기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34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

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.

1. 취득세: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

▣ 구 지방세법(2015. 7. 24.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0조(과세표준)

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연부(年賦)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(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,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,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▣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5. 7. 24.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0조(취득의 시기 등)

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(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,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)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 (단서 생략)

.끝.